

## 청 원 서 검 토 보 고 서

### 청 원 인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전화 :

### 피청원인 육성산업(주)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산71, 산71-1번지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 크라사기계설치공장 )

### 청 원 취 지

1. 위 청원인은 위 주소지에서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7. 7월경 부산사하구청에서 피청원인에게 동네 한복판에 건설폐기물공장(중간처리시설)을 인가해 주므로 인해 청원인과 동네 사람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공장 때문에 동네 사람 전부가 살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현택 의장님께 본 청원을 올리게 되었사오니 동민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 한복판에 인가된 건설폐기물 공장인가를 취소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리웁니다.
2. 부산광역시와 부산사하구청의 피청원인에게 인가해 준 건설폐기물 공장 허가는 주민들 동의 없이 주민들 몰래 인가내준 특혜성이 짙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권한을 남용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건설폐기물 공장 인가를 내주는 행위는 근절, 취소되어야 합당하므로 부득이 귀 이현택 의장님께 본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사오니 응분의 시정, 취소조치가 있으시길 청원 드리웁니다.

## 청 원 이 유

1. 피청원인이 육성산업(주) 상호로 건설폐기물 공장을 위 주소지에 설치한 것을 살펴보면 야산을 깎아 그 지상위에 지붕 있는 공장을 지어서 그 안에 기계를 설치하는 공장이 아니고 나대지 위에 돌 깨는 기계인 크러셔기계 일체를 설치해놓고 인근에 동네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데 돌깨는 기계소음과 분진(돌가루, 먼지)을 품어내면서 마사를 생산하여 물로 씻을 때 폐기물이 땅속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어떠한 폐수처리시설도 안 해놓고 동네 한복판에 건설폐기물 공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동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저해행위이므로 근절, 취소되어야 옳다고 판단됩니다.
2. 또 관할 시청, 관할 구청이 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이전에 주변동네 동민들의 동의가 필수조건인데 이를 해태하고 주민들 몰래 피청원인에게 특혜성 건설폐기물 공장을 인가해준 행위는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인가행위이고 탁상공론으로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건설폐기물 공장인가는 있을 수 없는 허가 행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3.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권한을 준 것인데 이를 남용하여 동네 한복판에 건설폐기물 공장을 인가하므로 인해 주변 동민들이 기계소음, 분진 때문에 동 인가 공장 근처에서는 주거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도 부산광역시와 사하구청 관계공무원들은 현장답사 한번 없었고, 동민들의 의사타진, 주변 환경조사 등을 일체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공장 신청자인 피청원인 말만 믿고 동 공장을 인가한 행위 때문에 기계소음과 분진 때문에 동민들이 각종 질병과 주거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모르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이현택 의장님께 고발, 청원하오니 선위조사하시와 어떤 이유에서도 동민들을 위해서 동네 한복판에서 건설폐기물 공장인가는 취소, 철회되도록 응분의 조치를 내려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 검토의견

- 본 청원건은
- 지난 2007. 11.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 2007. 12. 26. 체결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육성산업(주) 대표 이해철이 출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으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확인·점검작업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각종시설물이 설치 중에 있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사실로 판명되는 등 관련법령이나 행정절차면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불허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된 점을 감안 한다면
- 위 본건은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잘못된 정책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행정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증된 사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비산먼지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행여부 확행 등 후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 2

도시전문위원 정금배